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기사업자 사용 비용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전액 지원 〉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18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9.
3. 회부연월일 : 2025. 4.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전기사업법」 제49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원이 현행 100%에서 75%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25%는 '25년부터 한전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한전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로 인한 우려와 도서·벽지 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우려됨.

이에 현행법에 도서·벽지지역 전력공급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기사업자가 도서·벽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을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2 본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u>지원할 수 있다</u> .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 ----- ----- ----- <u>전액을 지원한다</u>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전기사업자인 한전은 현행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기술지원과 자가발전시설 사용지역에 대한 정기보수 및 관리·운영 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현행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전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가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전기요금 판매수입으로 충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결손액을 전액 지원함.

또한, 현행법 제12조제4항은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는 단위공사지역에서 전기사용자의 이농 및 사용폐지로 다른 전기사용자의 상환금 월부담금액이 배전시설공사 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전기사업자가 우선 부담하도록 규정함.

그리고, 현행법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제12조제4항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에 따라 한전에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이를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기금의 세부사업으로 ‘농어촌전기공급(5457-301)’을 편성하여 2001년부터 2024년까지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비용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였음.

육지의 발전소와 송·변전설비로 연계되기 어려운 도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서 내에 소규모 자가발전시설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러한 발전시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어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도서자가발전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임.

이처럼, 지자체나 한전이 손실에도 불구하고 도서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주민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자가발전시설까지 한전이 기술지원하는 것은 도서 지역도 평등하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기존에는 국가가 그 손실분을 전액 보전해왔음.

그런데, 2025년도 예산에 따르면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의 전체 사업비 1,179억 8,900만원 중 국가가 보조해주는 금액은 884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0억 7,100만원 감액되었고 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결손액과 자가발전시설 기술지원 비용의 25%를 한전이 일부 부담해야 함.

아울러, 도서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중 ‘농어촌 전기공급지원’ 내 ‘투자비’¹⁾도 전체 사업비 324억 6,700만원 중 국가가 보조하는 금액이 243억 5,000만원으로 투자비의 25%를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1) 2024년까지는 내역사업 ‘도서자가발전운영지원’에 ‘투자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에 따라 2025년부터 ‘투자비’가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되었음.

'25년도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사업(투자비 포함) 계획액 산출 근거

- ① 지자체 결손지원 : (2024) 14,195백만원 → (2025) 8,795백만원, -38.0%
 - (요구) 지자체 관리도서 인건비, 연료비 등을 감안, '24년 대비 5,400백만원 감액
 - (산출) 22개 지자체 도서운영비(13,269백만원※) - 수입(1,542백만원)
 - ※ 지자체 결손지원금 11,727백만원 × 75% = 8,795백만원 (25% 한전부담)
- ② 기술지원 : (2024) 1,094백만원 → (2025) 821백만원, -25.0%
 - (요구) 기술지원 인건비, 재료비 등을 감안, '24년 대비 273백만원 감액
 - (산출) 지자체 및 주민 관리도서(60개) 도서 기술지원 비용
 - ※ 기술지원비용 1,094백만원 × 75% = 821백만원 (25% 한전부담)
- ③ 한전 결손지원 : (2024) 123,850백만원 → (2025) 78,876백만원, -36.1%
 - (요구) 국제유가, 위탁운영 등을 감안, '24년 대비 44,974백만원 감액
 - (산출) 65개 한전 도서운영비(150,175백만원※) - 수입(45,007백만원)
 - ※ 한전 결손지원금 105,168백만원 × 75% = 78,876백만원 (25% 한전부담)
- ④ 투자비 : (2024) 14,556백만원 → (2025) 24,350백만원, +67.3%
 - (요구) 울릉공항 준공 등 대규모 신규부하 증가 감안, '24년 대비 9,797백만원 증액
 - (산출) 백령도 8,000, 위도 1,300, 울릉도 5,756, 배전 및 업무시설 등
 - ※ 투자비 32,467백만원 × 75% = 24,35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개정안은 도서 지역 전기공급 등 농어촌 전기공급을 위하여 한전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액 전력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의 온전한 부담임을 명확하게 하고 한전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사업성이 부족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을 한전이 수행하는 것은 전 국민의 공평한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소외 최소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고 수익성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그리고, 2025년과 같이 국가 예산 사정에 따라서 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 결손 지원이나 기술지원 등 기존에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비용의 일부를 한전에게 부담시키면 현재 대규모 적자 상황인 한전에 추가적으로 경영상 부담²⁾³⁾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면 총괄원가원칙에 따라 해당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우려가 있고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사업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은 전력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1

2)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의 부담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25%로 정하였을 때, 2025년 기준 한전이 새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376억원임.

3) 특히, 2022년 이후 한전은 전기판매사업 부문에서 재무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었고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 본래 업무인 송·변전설비에 대한 투자가 적기에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